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5. 8. 25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95. 7. 25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95. 8. 14
다. 상정일자 : 제36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95. 8. 2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윤정중)
가. 제안이유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주민의 편의도모와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해 개정함.
나. 주요골자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제1조중 "주민등록법" 다음에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삽입하고 제2조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하며 동조 제3호를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허영훈)
개정내용은 제2조(권한의 위임)중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지 않았던 "제3호, 주민등록법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것인데 이는 서울시에서 '95. 6. 17 행정 13207－1043호로 준칙이 시달된 바 있으며, 현재도 실질적으로는 동장이 수시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처리하고 구청장(총무과소관)은 사후 실기사건 보고에 의한 형식적인 조정결의 절차만 거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속한 사무처리와 주민의 편의도모 뿐만 아니라, 자치법규는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동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

제 출 년 월 일 : 1995. 7. 2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주민의 편의도모와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제1조중 "주민등록법" 다음에"(이하 '법'이라 한다)"를 삽입하고 제2조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하며 동조 제3호를 삭제

3. 개정근거
－내무부 주민 13207－349('94. 6. 7)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필요없음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민등록법" 다음에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삽입한다.
제2조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의거 …… …… ……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삭제)
4. (생략)	4. (현행과 같음)